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연숙 의원 대표발의)

의 번	안 호	2453
--------	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7.

발의의원 : 이연숙 의원,

양은숙 의원, 김보경 의원

1. 제안이유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
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다자녀기준 완화(별표 1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비고 1란 중 “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”를 “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. 단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표 1 중 다자녀가정 개정규정의 적용례) 별표 1의 비고 1란 중 다자녀가정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용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【별표 1】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(제6조제1항 관련)				【별표 1】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(제6조제1항 관련)			
대상자	체험료		비고	대상자	체험료		비고
	개인	단체			개인	단체	
일반	10,000원	8,000원	※ 비 고 1. - (생략) - (생략) - (생략) - <u>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</u> - (생략) - (생략) - (생략)	일반	10,000원	8,000원	※ 비 고 1.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<u>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. 단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</u>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
달성군민	8,000원	-		달성군민	8,000원	-	
다자녀 가정				다자녀 가정			
장애인				장애인			
국가보훈대상자				국가보훈대상자			
아젤리아 호텔, 자연휴양림,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	6,000원	-	※ 비 고 2. - (생략)	아젤리아 호텔, 자연휴양림,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	6,000원	-	※ 비 고 2. - (현행과 같음)

